

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538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례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876,934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 2,249,863원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9. 접수 제11524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2. 나.항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 D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고, 2022. 9. 16. 현재 대출금이 남아 있다.

대출일	대출금액	연체금리	원 금	이 자	합 계
2016.5.25.	23,000,000원	27.9%	23,000,000원	29,848,087원	52,848,087원
2014.10.21.	8,000,000원	34.9%	2,249,863원	2,778,984원	5,028,847원

○ D 주식회사는 2017. 9. 21. E 주식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E 주식회사는 2020. 11. 9.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022. 2. 11. 피고 C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9. 접수 제1152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B은 2022. 2월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57,876,934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동 주민센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7,876,934원 및 그 중 2016. 5. 25. 대출원금 23,000,000원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14. 10. 21. 대출원금 2,249,863원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다음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생전에 피고 B에게 90,000,000원 정도를 증여하여 피고 B이 그 특별수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상속받을 것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 C의 딸이자 피고 B의 동생인 H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이나 피고 B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원천이 망인이라고 주장한다.

순번	날짜	주체 및 상대방	특별수익주장	
1	2008.12.15.	망인이 H에게		138,000,000원
2	2011.5.2.	H가 망인에게		100,660,000원
3	2011.12.26.	H가 피고 B에게	25,000,000원	
4	2011.12.29.	피고 C이 H에게		50,000,000원
5	2011.12.29.	망인이 H에게		50,000,000원
6	2013.12.20.	H가 I에	901,950원	
7	2013.12.20.	H가 (주)J에	2,976,441원	
8	2013.12.20.	H가 K은행에	22,866,734원	
9	2013.12.20.	H가 (주)L에	4,646,090원	
10	2013.12.20.	H가 (주)M에	2,053,000원	
11	2013.12.20.	H가 N은행에	7,727,486원	
12	2013.12.20.	H가 (주)O에	815,030원	
13	2013.12.20.	H가 P카드에	408,562원	
14	2013.12.20.	H가 Q카드에	408,964원	
15	2013.12.20.	H가 R에	3,494,985원	
16	2013.12.20.	H가 S카드에	513,793원	
17	2013.12.20.	H가 T은행에	10,211,438원	
18	2013.12.20.	H가 U카드에	3,893,201원	
19	2019.5.10.	망인이 피고 B에	5,000,000원	
		합계	90,917,674원	

살피건대, 을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H에 송금한 순번 1번 2008. 12. 15. 138,000,000원은 송금 당일 2008. 12. 15. 전액 인출되고, 순번 4, 5번 2011. 12. 29. 100,000,000원은 그 송금 당일 2011. 12. 29. 잔액 58,352원을 남기고 거의 전액 인출된 사실, 2011. 12. 26. H의 통장으로 5,400,000원, 19,600,000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후 H의 통장에서 순번 3번 25,000,000원이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가 피고 B에게 송금한 순번 3번 25,000,000원, 피고 B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순번 6 내지 18번 합계 60,917,674원에 대하여 H가 망인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 B에게 직접 송금한 순번 19번 2019. 5. 10. 5,000,000원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익이기는 하나 그 정도의 금원은 부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증여로 보일 뿐이므로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별지